

제26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

수석전문위원 정 우 속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3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## 2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설운영을 위탁하여,
- 고객지원센터 유지·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시장 이용고객과 지역 주민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: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
- 위탁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- 위탁기간: 5년(2020. 3. 1. ~ 2025. 2. 28.)

## 나. 추진일정

- 2020. 2월: 수의계약에 따른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
- 2020. 3월: 위탁협약 체결 및 운영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안전점검비 연4,000천원(구비 100%)

## 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,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 하고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후 지도·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**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**
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"시설현대화사업"이라 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장,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·개량·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,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업시설: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
  2. 공동시설: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창고, 상인교육시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 및 관광(테마)거리 등의 조성
  3. 고객편의시설: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, 진입로, 화장실,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·확장 및 수리 등
- 3의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·확장 및 보수 등
- 3의3. 홍보시설: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, 전광판, 방송시설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
4.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(이하 “시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2.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3. 시장관리자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